

의안번호	2212819
의 퇴 인	서영교 의원
회 답 일	2025.11.5.
추 계 번 호	25G49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조세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각종 조세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할 경우 재정수입은 2026년 37억원 등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총 1조 6,971억원(연평균 4,24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및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할 경우 재정수입은 2027년 429억원 등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총 869억원(연평균 29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할 경우 재정수입은 2027년 7,562억원 등 2027년부터 2028년까지 총 1조 6,023억원(연평균 8,012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건설·양도·운영(BTO) 방식으로 건설된 사립대학 기숙사 운영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할 경우 재정수입은 2026년 9억원 등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총 23억원(연평균 12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농어민 직수입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할 경우 재정수입은 2026년 28억원 등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총 56억원(연평균 28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단위: 억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 2년 연장(안 제87조제2항)	-	-429	-429	-	-857	-429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2년 연장(안 제87조제3항)	-	-	-6	-6	-12	-6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연장(안 제88조의2제1항)	-	-7,562	-8,461	-	-16,023	-8,012
사립대기숙사 운영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안 제106조제1항)	-9	-14	-	-	-23	-12
농어민 직수입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안 제106조제2항)	-28	-28	-	-	-56	-28
계	-37	-8,033	-8,896	-6	-16,971	-4,243

주: 1. 각 항목의 연평균은 세수효과가 존재하는 연도를 대상으로 계산한 수치임

2.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의 세수효과는 가입의무기간(2년)을 고려하여 납입 후 2년 후에 발생할 것으로 가정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87조제2항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적용기한: (현행) 2025년 12월 31일 (개정안) 2027년 12월 31일	
2	안 제87조제3항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 적용기한: (현행) 2025년 12월 31일 (개정안) 2027년 12월 31일	
3	안 제88조의2제1항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 적용기한: (현행) 2025년 12월 31일 (개정안) 2027년 12월 31일	
4	안 제106조제1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 건설·양도·운영(BTO) 방식으로 건설된 사립대학 기숙사 운영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적용기한: (현행) 2025년 12월 31일 (개정안) 2027년 12월 31일	
5	안 제106조제2항(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가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와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적용기한: (현행) 2025년 12월 31일 (개정안) 2027년 12월 31일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87조제2항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2	안 제87조제3항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비과세)	○	
3	안 제88조의2제1항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	
4	안 제106조제1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	
5	안 제106조제2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적용기한 연장 기간(2년), 시행일(2026. 1. 1.) 및 재정수반요인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재정수반요인별 추계기간 설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의 세수효과는 다음연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추계기간을 2027~2028년으로 설정
-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의 경우 최소 유지기간(2년)을 감안하여, 납입 후 2년 후에 세수효과가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추계기간을 2028~2029년으로 설정
-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의 경우 계좌 가입과 금융소득 지급에 따른 비과세 적용 사이에 1년의 시차가 있다고 가정하여 추계기간을 2027~2028년으로 설정
 - － 비과세종합저축 계좌 평균 소유기간(약 12개월)을 고려
- 사립대기숙사 운영 부가가치세 면제 및 농어민 직수입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경우 시행일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을 2026~2027년으로 설정

- 최근 조세지출 실적, 최근 추세 및 향후 전망을 바탕으로 기타 제도 변화에 따른 효과 등을 반영하여 추계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 2년 연장(안 제87조제2항)

(1) 제도 개요 및 감면실적

- (제도 개요) 동 특례는 무주택자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한도 300만원)를 소득공제
 - 대상자: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
 - 특례내용: 저축납입액(연 납입액 300만원 한도)의 40% 소득공제
 - 현행 적용기한: 2025년 12월 31일
- (감면실적)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의 최근 조세지출 실적은 다음과 같음
 - 2022년 414억원까지 증가한 실적이 2023년 396억원으로 감소한 후, 2025에는 445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다소 불규칙한 흐름이 나타남

[표 2]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특례 실적: 2021~2025년

(단위: 억원)

	2021	2022	2023	2024	2025p
감면실적	357	414	396	400	445

주: p는 잠정치임

자료: 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연도

(2) 추계 방법

- 「조세지출예산서」 상 2023~2025년 감면실적 평균액이 향후에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되, 제도 변화를 반영하여 추계

- 향후 「조세지출예산서」 상 2022~2025년 조세지출액 평균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되, 과거 실적 고려시 납입액 한도 인상 효과를 반영함
 - 2024년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대상 납입액 한도가 종전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는데,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연평균 실적을 산출할 때 해당 효과를 고려
- 2024년부터 납입액 한도가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2023~2024년 실적에 해당 효과를 반영하여 평균액을 계산
 - 제16차 재정패널조사 자료상 주택청약저축에 종전 한도(240만원) 이상으로 저축한 가구는 300만원까지 납입액을 증가시킬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그 결과 납입액 한도 인상으로 세수효과가 약 5.6%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

(3) 추계 결과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함에 따라 소득세수는 2027년 429억원, 2028년 429억원 등 2년간 총 857억원(연평균 429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3]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단위: 억원)

	2027	2028	누적	연평균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 2년 연장(안 제87조제2항)	-429	-429	-857	-429

나.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2년 연장(안 제87조제3항)

(1) 제도 개요 및 감면실적

- (제도 개요) 동 특례는 무주택 세대주 등 청년이 가입한 청년우대형주택 청약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 대상자: 총급여 3천 6백만원(종합소득금액 2천 6백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

- 단, 직전 3개 연도 내 한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는 제외
* 이자·배당소득 2,000만원 초과자
- 특례내용: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비과세
(비과세 한도액 500만원, 인정 납액금액 한도 연 600만원)
- 단,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을 2년 이상 유지해야 함
- 현행 적용기한: 2025년 12월 31일

□ (감면실적)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에 대한 최근 조세지출 실적은 다음과 같음

- 동 특례의 실적이 2022년까지는 1억원 미만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5년 6억원까지 증가함
- 동 특례는 최소 2년간의 가입유지 요건 등을 가지고 있으므로 제도가 신설된 2018년부터 일정기간 동안은 낮은 실적을 나타냄

[표 4]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조세특례 실적: 2021~2025년

(단위: 억원)

	2021	2022	2023	2024	2025
감면실적	0.2	0.5	2	3	6

주: p는 잠정치임

자료: 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연도

(2) 추계 방법

- 「조세지출예산서」 상 2025년 잠정치 실적(6억원)이 향후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 향후 이자소득 비과세 수준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최근 실적이 유지된다고 가정함
- 2025년부터 동 소득공제·비과세 대상이 무주택세대주에서 그 배우자까지 확대되었으나, 해당 효과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워 동 추계에서는 미반영

(3) 추계 결과

-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함에 따라 소득세수는 2028년 6억원, 2029년 6억원 등 2년간 총 12억원(연평균 6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5]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단위: 억원)

	2028	2029	누적	연평균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2년 연장(안 제87조제3항)	-6	-6	-12	-6

주: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의 세수효과는 가입의무기간(2년)을 고려하여 납입 후 2년 후에 발생할 것으로 가정

다.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안 제82조의2제1항)

(1) 제도 개요 및 감면실적

- (제도 개요) 비과세종합저축은 노인, 장애인 등의 생계형 저축에 대한 비과세 제도로써 노인·장애인·생활보호대상자 등 생계가 어려운 소외계층의 저축(한도 5천만원)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제도임

[표 6] 비과세종합저축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도입연도	2015. 1. 1. 명칭 변경 (2000. 10. 21.)
일몰기한	2025. 12. 31.
지원대상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록 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세제혜택	일몰기한까지 가입한 저축액에 대하여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납입한도	5천만원
의무납입기간	없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감면실적)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에 따른 조세지출액은 202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 실적은 9,091억원임
 - 2021년의 경우 과세특례 대상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제외되는 등 대상자 축소의 영향으로 조세지출 실적이 전년대비 감소
 - － 2020년 1월 1일부터 직전 3개연도 이내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
 - 2022년부터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저축 규모가 확대되면서 2023년부터 조세지출 실적도 확대

[표 7]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지출 실적

(단위: 억원)

	2020	2021	2022	2023	2024
조세지출액	3,386	2,575	2,554	5,461	9,091

자료: 정부의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추계 방법

- 2024년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에 따른 조세지출 실적치에 향후 비과세종합저축 규모 변화와 시장금리 전망을 반영하여 세수효과 추계
 - 향후 비과세종합저축 규모는 2019~2024년 연평균 비과세종합저축 한도금액 증가율(7.4%)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한다고 가정
 - － 가입자는 가입시점에 5천만원 이내에서 한도금액을 설정해야 하며, 2024년 기준 1인당 평균 한도금액은 3,373만원 수준으로 나타남
 - 시장금리 전망은 국고채 3년물 이자율에 대한 전망을 활용
 - － 수신금리에 대한 전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금리를 대표하는 국고채 3년물 이자율의 전년대비 증감율에 따라 최종 조세지출액이 변동할 것으로 가정
- 2019~2024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현황은 다음과 같음
 - 2024년 12월 기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약 542만명, 가입계좌는 약 1,008만개 수준이고, 한도금액은 183조원 수준으로 나타남
 - 비과세종합저축 한도금액은 2019년 128조원에서 2024년 183조원으로 증가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7.4%로 나타남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 연령이 2019년 65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 점을 고려하여 2019년 이후 실적치 활용

[표 8]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현황: 2019~2024년

(단위: 명, 개, 조원, 만원)

기준연월	가입자 수 ¹⁾	계좌수 ²⁾	한도금액 ³⁾	가입자당 평균한도
2019. 12.	4,195,017	7,891,578	128	3,048
2020. 12.	4,230,086	7,799,461	130	3,063
2021. 12.	4,346,098	7,912,717	135	3,109
2022. 12.	4,897,897	8,903,875	160	3,260
2023. 12.	5,187,421	9,605,841	172	3,318
2024. 12.	5,416,950	10,085,000	183	3,373

주: 1) 활동계좌(해지계좌 제외)에서 추출한 총 가입자 수(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중복 제거)

2) 활동계좌(해지계좌 제외)에서 추출한 총 계좌 건수

3) 활동계좌(해지계좌 제외)에서 추출한 한도금액의 합산치

4) 계좌 개설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개월 수 평균

자료: 은행연합회

□ 2024년 이후 연간 시장금리 추이는 다음과 같음

- 수신금리에 대한 전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시장금리를 대표하는 국고채 3년물 이자율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치(2025.10.) 활용

[표 9] 연간 시장금리 최근 추이 및 향후 전망

(단위: %)

구 분	2024	2025	2026	2027
국고채 3년물	3.1	2.4	2.4	2.5
(증감율)	-	(-22.8%)	(0.0%)	(4.2%)

자료: 2024년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자료, 2025년부터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3) 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할 경우 재정수입은 2027년 7,562억원 등 2027년부터 2028년까지 2년간 총 1조 6,023억원(연평균 8,012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10]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단위: 억원)

구 분	2027	2028	누적	연평균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연장 (안 제88조의2①)	-7,562	-8,461	-16,023	-8,012

라. 사립대학 기숙사 운영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2년 연장(안 제106조제1항)

(1) 제도 개요 및 감면실적

□ (제도 개요) 건설·양도·운영(BTO) 방식으로 건설된 기숙사 시설의 시설관리 운영권 및 그 기숙사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적용기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중 제8호¹⁾ 및 제8호의2²⁾는 2014년말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기숙사에 대해 적용하고 동법 동조항 제8호의3³⁾은 2015년초부터 2025년말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기숙사에 대해 적용

□ (감면실적) 동 조세지출액은 2020년 44억원, 2024년 59억원 등 최근 5년간 증가 추세(연평균 7.6% ↑)

○ 이 가운데 2015년부터 실시협약을 체결한 사립·연합 기숙사(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8호의3) 운영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관련 조세지출 실적은 2022년 13.8억원, 2023년 19.9억원, 2024년 23.1억원 등 수준⁴⁾

1) 교육부장관의 추천이나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건설한 학교시설(「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학교가 제공하는 시설관리운영권 및 그 추천을 받은 자가 그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2)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설립한 특수 목적 법인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건설한 기숙사에 대하여 국가 및 지자체가 제공하는 시설관리운영권 및 그 법인이 그 기숙사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3) 다음 각 목의 법인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방식을 준용하여 건설한 기숙사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호에서 “학교”라 한다)가 제공하는 시설관리운영권 및 그 법인이 그 기숙사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가.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설립한 특수 목적 법인

나.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학교가 공동으로 설립한 특수 목적 법인

4) 한국사학진흥재단 자료

[표 11] 사립대기숙사 운영 부가가치세 면제 관련 조세지출 실적: 2020~2024년
(단위: 억원)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증가율
조세지출액	44	49	52	57	59	7.6%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각 연도 「조세지출예산서」)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추계 방법

-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는 2026년초부터 2030년말까지 실시협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기숙사에 대한 조세지출이므로, 향후 동 조세지출 규모는 최근 실적 추세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2015년부터 실시협약을 체결한 사립·연합 기숙사(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제8호의3) 운영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관련 조세지출 증가분을 동 기간 관련 실시협약의 신규 체결 실적으로 보고, 최근 실적(2023년 6.2억원, 2024년 3.2억원)의 평균 4.7억원이 2025년부터 향후 추계기간까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2023년 실적 6.2억원(= 19.9억원 - 13.8억원)
 - 2024년 실적 3.2억원(= 23.1억원 - 19.9억원)
- 개정안 통과 이후 2026년부터 2027년까지의 추계기간 동안 매년 실시협약이 신규로 체결되고 이후 추계기간 동안 누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하여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 2025년 세수효과 : 4.7억원 (= 4.7억원 × 1)
 - 2026년 세수효과 : 9.3억원 (= 4.7억원 × 2)

(3) 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건설·양도·운영(BTO) 방식으로 건설된 사립대학 기숙사 운영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5년말에서 2027년말로 2년 연장함에 따라 재정수입은 2026년 9억원 등 2026~2027년 2년간 총 23억원(연평균 12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2년간 국세인 부가가치세는 총 17억원(연평균 9억원) 감소하며 지방소비세는 총 6억원(연평균 3억원) 감소

[표 12] 사립대학 기숙사 운영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단위: 억원)

	2026	2027	누적	연평균
사립대기숙사 운영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안 제106조제1항)	-9	-14	-23	-12
- 국세(74.7%)	-7	-10	-17	-9
- 지방세(25.3%)	-2	-4	-6	-3

마. 농어민 직수입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2년 연장
(안 제106조제2항)

(1) 제도 개요 및 감면실적

- (제도 개요) 동 제도는 농민 등이 직접 수입하는 비료, 농약, 사료, 기계 등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하는 내용
- (감면실적) 동 제도에 따른 최근 조세지출액은 2021년 36억원, 2022년 46억원, 2025년(전망) 19억원 등으로 증감을 반복하는 추세로, 최근(2020~2025년)의 연평균 조세지출액은 28억원 수준

[표 13] 농어민 직수입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조세지출 실적:
2020~2025년(전망)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전망)	연평균
조세지출액	21	34	46	24	23	19	28

자료: 정부,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추계 방법

- 향후 추계기간 동안 최근(2020~2025년)의 연평균 조세지출액(28억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3) 추계 결과

- 농민 등이 직접 수입하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의 적용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27년 말까지 2년 연장할 경우 부가가치세수는 2026년 28억원 등 2026~2027년 2년 간 총 56억원(연평균 28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2026~2027년 국세인 부가가치세(74.7%)는 총 42억원, 지방소비세(25.3%)는 총 14억원 감소 예상

[표 14] 농어민 직수입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단위: 억원)

	2026	2027	누적	연평균
농어민 직수입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기한 연장(안 제106조제2항제9호)	-28	-28	-56	-28
- 국세(74.7%)	-21	-21	-42	-21
- 지방소비세(25.3%)	-7	-7	-14	-7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1과	신홍철, 이정훈, 김효경, 박성은	박연서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신홍철	02-6788-4745	hongfe@assembly.go.kr